

知的所有權保護를 위한

國際機構 및 條約의 紙上探訪

- …… 知的所有權 保護를 위한 國際機構 및 條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基
- ……礎적인 質問이지만 선뜻 體系의 對答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
- ……들 機構 및 條約과 接觸 機會가 적었기 때문이다. ……………
- …… 그러나 知的所有權의 國際化時代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機構 및 條約을
- ……모르고는 知的所有權의 保護를 期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本誌는 紙上探訪을 마
- ……련, 이들 機構 및 條約을 紹介하기로 했다. ……………<金 亨 昊 記> ……

◎ 第 2 回 ◎

여 國際貿易에 있어서 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iv) 特許文獻에 收錄된 技術情報을 손쉽게 檢査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目的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開發 途上國들은 國內法令 및 政府制度의 制定과 現代化, 國際條約에의 加入, 政府, 產業界, 業界에 다수의 專門家 확보, 다수의 特許文獻의 획득 및 그 內容을 檢査하기 위한 개선된 方法의 추구등이 필요하다.

—WIPO의 支援은 주로 助言, 研修 및 文獻·施設 제공 등으로 구분된다. 助言은 WIPO의 職員, WIPO 나 WIPO 주관 國際會議에서 選출된 專門家들이 담당 한다.

研修는 擔當 業務에 관한 個別的인 研修와 코우스, 세미나, 워크숍등과 같이 집체적인 研修로 나누어지며, 개최를 원하는 當事國이나 기타 國家들에서 개최될 수 있다.

이러한 活動의 財源은 WIPO豫算, 加盟國 및 UNDP*1 등과 같은 機關의 寄附金으로 充당된다.

대부분의 活動은 가능한한 當該 開發途上國政府의 國家프로그램, 어느 地域協議體의 地域프로그램의 요청에 의하거나 이들간의 연계로 실시되는 數個年 計劃의 一部로써 행해진다.

이들 開發協力 “活動들은 PCIP*2, PCPI*3 등 두개의 WIPO 常任委員會의 감독하에 수행되며, 이들 常任委員會는 自發的으로 財政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다.

■ 이달의 目次 ■

■ 主要活動

■ 우리나라 工業所有權制度和 관련한 WIPO의 역할

■ WIPO主要 刊行物 目錄

<다음號에 繼續>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2)

■ 主要活動

▲開發途上國에의 지원

UN의 여타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WIPO의 주요 活動중의 하나는 開發途上國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公업소유권分野

(i) 開發途上國의 企業이나 國民에 의한 特許性있는 發明의 創作을 질적 및 양적으로 장려하고 향상시킴으로써 他們자신의 技術 利用도를 향상시킨.

(ii) 外國의 特許技術의 획득여건 개선.

(iii) 商標 및 서비스商標의 좀더 개선된 保護를 통하

*1. UNDP :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略稱(國際聯合開發計劃).

*2. PCIP : 工業所有權과 關聯한 開發協力を 위한 WIPO 常任委員會로 원명칭은 The WIPO Permanent Committe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Related to industrial Property이다. 또는 PCDC로 쓰기도 한다.

*3. PCPI : 特許情報에 관한 WIPO 常任委員會로 원명칭은 The WIPO Permanent Committee on Patent Information 이다.

1985年 5月 15日 現在 PCIP는 85個國을 會員國으로 가지고 있으며 PCPI 會員國은 63個國에 이르고 있다.

● 著作權分野

(i) 開發國에 있어서 當該國民에 의한 文學 및 예술 著作物의 創作을 장려하고 증가시킴으로써 그들 고유 언어 및 인종, 사회관습, 영감에 상응하는 그들 자신의 민족문화를 유지시키는 것.

(ii) 外國인이 著作權을 소유하고 있는 文學 및 예술 著作物을 使用 또는 尙유할 권리의 獲得與件을 개선하는 것.

◎ 이들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開發途上國은 著作權分野 全般에 걸쳐서 國內法令 및 制度를 制定 또는 現代化하고 國際條約에 加入하여 좀더 많은 專門家를 확보하는 것이 必要하다.

◎ WIPO의 支援은 주로 助言과 研修로 나누어 진다. (工業所有權分野 参照)

◎ 이들 活動을 하기위한 財源은 WIPO의 豫算에서 대부분 充당하며 일부를 少數의 先進國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다.

◎ 이들 開發協力活動은 또한 인접권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PCCN*4의 감독하에 추진된다. PCCN 에는 어느 국가라도 財政부담없이 自發적으로 加入할 수 있으며 1985年 5月 15日現在 65個國이 加入하였다.

◎ WIPO는 UNESCO와 함께 “著作權에 의해 保護되는 著作物에 대한 開發途上國에 의한 접촉을 위한 UNESCO-WIPO 연계 國際서비스”*5를 계속하고 있다.

主要業務로는 開發途上國의 立場에서 財政的조건을 포함하여 外國인(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제작자) 소유로 著作權 保護를 받고 있는 著作物을 複製, 번역 및 다른 용도로의 使用 등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계서비스는 UNESCO 및 WIPO 事務總長에 의해 임명되는 委員으로 구성되는 UNESCO-WIPO 연계 자문위원회의 助言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

▲ 條約改正

WIPO에 의해 관리되는 諸 條約들을 시대상황변화 및 必要에 적응하기 위하여 改正의 必要性 有無 관찰을 계속하고 있다. 條約 또는 施行令을 改正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준비를 거쳐 改正與否를 결정하는 當該國家間協議體에 제출한다.

1984년에는 1883年 조인된 파리조약의 7차 改正作業이 진행중이었다.

▲ 分類의 修正

國際特許分類(IPC), 標章의 登錄을 위한 商品 및 서비스의 國際分類, 國際意匠分類 등이 國家間委員會 및 國際事務局에 의해 이들을 개선하고 좀더 새롭게 유지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

▲ 其他 事項

WIPO는 WIPO에 의해 관리되는 諸條約뿐만 아니라 工業所有權分野 各國의 法令, 地域의 配列, 契約의 實施, 專門活動등에 있어서 適應이 要請되는 國際産業, 貿易 및 文化的 關係등의 변화 全般에 걸쳐 관찰을 계속하고 있다.

▲ 國際特許情報센터(INPADOC)*6

오스트리아政府와 WIPO間的 協定에 遵하여 1972年 비엔나에 設立되었다. 센터는 컴퓨터에 每年 거의 100萬件에 달하는 特許文獻의 書誌의 데이터를 入力시켜 놓고 있으며 各國의 特許廳, 産業界, 研究 및 開發機關에 의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의 검색을 허용하고 있다.

財政 및 運營은 오스트리아政府가 책임지고 있으며 WIPO는 各國 特許廳과의 접촉관계에 대하여 INPADOC을 支援한다.

■ 우리나라 工業所有權 制度와 有關한 WIPO의 역할

▲ 加入 日誌

1977. 10. 31~11. 1 特許廳 代表 WIPO訪問

1978. 3 國際特許情報센터(INPADOC)와 資料交換協定 締結

1978. 10. 8 WIPO 專門家團과 WIPO加入을 논의하고 特許廳 근대화계획과 有關한 7개항에 달하는 합의 작성체결.

1978. 11. 24 第100會 定期國會에서 WIPO加入案 同意

1978. 12. 1 WIPO 國際事務局에 加入書 寄託

*4. PCCN : 著作權 및 인접권에 관한 開發協力を 위한 WIPO 常任委員會로서 원명칭은 “The WIPO Permanent Committe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Related to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이다.

*5. “Joint International Unesco-WIPO Service for Access by Developing Countries to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6. INPADOC; The International Patent Documentation Center의 略稱

- 1979. 2. 20 WIPO開發協力常任委員會(PCIP)加入
- 1979. 3. 1 WIPO協約 發效됨에 따라 81번째의 WIPO 加盟國(Class VI)이 됨.
- 1980. 5. 4 파리 協約에 加入
- 1984. 8. 10 特許協力條約(PCT) 加入
PCT 加入國이 됨에따라 자동적으로 PCPI (特許情報에 관한 WIPO常任委員會) 加入 國이 됨.

▲ WIPO의 支援

- 專門家양성을 위한 海外연수지원
 - 專門家招請강연회 지원
 - 國內工業所有權 關係法 改正을 지원하기 위하여 工業所有權 四法에 관한 개정시안을 작성제공함과 아울러 개정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공.
 - UNDP와의 協力下에 자문, 시설, 및 자금등을 통하여 特許廳 現代化計劃 支援
 - 先行技術調査 協力
- 最新 技術情報의 產業界 提供과 高度技術分野審査의 促進을 위하여 1978年 이래 先行技術調査 支援을 계속해왔으며 1986년에는 總 50件이 할당되어 特許廳 審査目的用으로 20件, 本會를 통한 產業界 最新 技術情報 調査目的으로 30件을 調査 擔當機關인 日本特許廳에 의뢰하였다.

■ WIPO主要 刊行物 目錄

1) 定期刊行物

분류번호*	도 서 명	年間구독료(스위스프랑)	
100(F)	공업소유권(월간)	(La Propriété industrielle)	140
101(E)	"	(Industrial Property)	140
102(F)	저작권(월간)	(Le Droit d'auteur)	130
102(E)	"	(Copyright)	130
104(FE)	國際意匠誌(월간)	(International Designs Bulletin/Bulletin des dessins et modèles internationaux)	160
105(F)	原產地表示(수시)	(Les Appellations d'origine)	변동
108(E)	PCT誌(격주간)	(PCP Gazette)	440
WIPO 뉴스레터			
434(A)	아랍어판(In Arabic)		...무료

434(E)	英語版(In English)	...무료
434(F)	佛語版(In French)	... "
434(P)	포르투갈어판(In Portuguese)	... "
434(R)	러시아어판(In Russian)	... "
434(S)	스페인어판(In Spanish)	... "

2) 諸 條約集(條約·協約 및 協定에 관한)

一知的所有權		
• WIPO設立協約(1967)		
251(E)	스톡홀름 會議 채택조약집(Original text adopted by the Stockholm Conference (1967))	...4
一工業所有權		
• 파리協約		
201(E)	스톡홀름 條例(1967) 英文版 (Official English text of the Stockholm Act)	...4
• 商品에 관한 허위표시금지에 관한 마드리드協定		
261(E)	리스본條例(1958) 및 스톡홀름 추가條例(1967) 英文版 (Text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Lisbon Act (1958) and the Additional Act of Stockholm(1967))	...4
• 標章의 國際登錄 및 諸規定에 관한 마드리드協定		
260(E)	스톡홀름條例(1967) 및 諸 規定(1974)의 英文版 (Text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Stockholm Act (1967) and Regulations (1974))	...5
• 意匠의 國際寄託에 관한 헤이그協定		
262(E)	런던(1934) 및 헤이그(1960) 條例, 모나코 追加 條例(1961), 스톡홀름 補充條例(1967) 및 제네바議定書(1975)의 英文版 (Text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Acts of London(1934) and The Hague(1960), the Additional Act of Monaco(1961), the Complementary Act of Stockholm(1967) and the Protocol of Geneva(1975))	...5
• 標章의 登錄을 위한 商品 및 서비스의 國際分類에 관한 나이스協定		
263(E)	스톡홀름條例(1967)의 英文版 (Text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Stockholm Act(1967))	...4

* E : 英語版 A : 아랍어판 R : 러시아어판 F : 佛語版 P : 포르투갈어판 S : 스페인어판

292(E)···제네바條例(1977) ……4
 (Original text of the GenevaAct(1977))
 • 原產地表示와 그들의 國際登錄 및 規定의 保護를 위한 리스본 協定

264(E)···스톡홀름條例(1967) 및 規定(1976)의 英文版 ……4
 (Text of the English translatoon of the Stockholm Act(1967)and Regulations(1976))
 • 意匠의 國際分類를 정한 로카르노 協定

271(E)···로카르노會議(1968)에서 채택된 協定文 ……4
 (Original text adopted by the Locarno Conference(1968))
 • 特許協力條約(Patent Cooperation Treaty)

274(E)···1979年 및 1984年에 개정된 워싱턴회의(1970)에서 채택된 조약집 및 1985. 1. 1 발표된 規定 ……12
 (Original text of the Treaty adopted by the Washington Conference(1970) amended in 1979 and 1984, and Regulations as in force on January 1, 1985)
 • 國際特許分類(IPC)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協定

275(E)···스트라스부르그會議(1971)에서 채택된 協定文 ……4
 (Original text adopted by the Strasbourg Conference(1971))
 • 商標登錄條約(TRT)

265(E)···비엔나會議(1973)에서 채택된 條約및 規定集 ……8
 • 標章의 形象要素의 國際分類를 確立한 비엔나協定

266(E)···비엔나會議(1973)에서 채택된 協定文 ……5
 (Original text adopted by the Vienna Conference(1973))
 • 活字體 및 이의 國際寄託 保護를 위한 비엔나協定

267(E)···비엔나會議(1973)에서 채택된 協定, 規定및 議定書 ……6
 (Original text of the Agreement, Regulations and Protocol adopted bythe Vienna Conference(1973))
 • 特許節次를 위한 미생물寄託의 國際的 인정에 관한 부다페스트條約

277(E)···부다페스트會議(1977)에서 채택된 條約 및 規定集 ……5
 (Original Text of the Treaty adopted by the Budapest Conference(1977) and Regul-

ations (as inforce on January 31, 1981))
 • 科學的 發見의 國際 記錄에 관한 제네바 條約

279(E)···제네바會議(1978)에서 채택된 條約集 ……4
 (Original text of the Treaty adopted by the Geneva Conference(1978))

—新種 植物
 • 新規한 變種植物 保護를 위한 國際協約

293(E)···파리會議(1961)에서 채택된 協約 제네바會議(1972)에서 채택된 追加條約 제네바會議(1978)에서 채택된 개정協約의 英文版 ……5
 (Official English text of the Convention adopted by the Paris Conference(1961) and of the Additional Act adopted by the Geneva Conference(1972) and English original Revised Text adopted bythe Geneva Conference(1978))

—著作權
 • 文學 및 예술著作物의 保護를 위한 베른 協約

278(E)···부르셀條例集(1948) ……4
 (Original text of the Brussels Act(1948))

283(E)···스톡홀름 條例集(1967) ……4
 (Original text of the Stockholm Act(1967))

287(E)···파리條例集(1971) ……4
 (Original text of the Paris Act(1971))
 • 著作權料(Copyright Royalties)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마드리드 多國間協約

294(E)···마드리드條例集(1979) ……5
 (Original text of the Madrid Act(1979))

—인접권
 • 레코드 및 방송의 製作者 및 연주자의 保護를 위한 로마協約

328(E)···로마會議(1961)에서 채택된 協約集 ……4
 (Original text adopted by the Rome Conference(1961))
 • 레코오드의 무단복제에 대한 레코오드 제작자의 保護를 위한 協約

288(E)···제네바會議(1971)에서 채택된 協約集 ……4
 (Original text adopted by the Geneva Conference(1971))
 • 人工위성에 의해 전송되는 情報의 分配에관 한 協約

289(E)···부르셀會議(1974)에서 채택된 協約集 ……4
 (Original text adopted by the Brussels Confernce(1974)) <계속>